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역학조사·독성연구 시행 근거 및 공소시효 연장 특례 마련 >
■ 허종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827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역학조사·독성연구 시행 근거 및 공소시효 연장 특례 신설 등	2
※ 참고: 사회적참사위원회 권고사항(해당사항 발취)	13

I. 제안경위

2026년 3월 30일 허종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수입 또는 제조 등과 관련된 법률 위반 행위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위반 행위에 따라 10년 이하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각각 10년 또는 7년임.

그런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사상의 경우에 그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현행 공소시효 기간 내에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역학조사 및 독성연구 결과 등 현행법 위반 행위가 사상의 원인임을 규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함으로써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57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역학조사·독성연구 시행 근거 및 공소시효 연장 특례 신설 등

개정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사용과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사상(死傷) 등이 발생하는 경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 및 독성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역학조사와 독성연구 모두에 의해 그 원인이 증명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제57조의2 신설 및 제60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2(역학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사용과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사상(死傷) 또는 그에 준하는 건강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역학적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독성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또는 독성연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반 또는 독성연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신 설>

2. ~ 12. (생 략)

②·③ (생 략)

③ 누구든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제57조의2(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56조제3항의 죄 또는 제57조제3항의 죄는 사상(死傷) 또는 그에 준하는 건강피해의 원인이 제56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한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로 인한 것임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와 독성연구 모두에 의해 증명된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제60조(과태료) ①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과정에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2.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제56조제3항의 죄 또는 제57조제3항의 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

현행법령에서는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생활화학제품’¹⁾과 이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²⁾,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 등의 ‘살생물제’³⁾에 관하여,

이들을 제조·수입 하려는 경우 시험·검사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거짓으로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조·수입 중지명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3.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6. “살생물제”(殺生物劑)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말한다.

7. “살생물물질”이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이하 “제거등”이라 한다)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한다.

8. “살생물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9. “살생물처리제품”이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한다.

령을 내리는 등 안전관리 규제와 관리방안⁴⁾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규제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그 벌칙의 경중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7천만원 이하의 벌금⁵⁾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49조⁶⁾에 따라 공소시효는 각각 10년 및 7년임.

[처벌 규정과 공소시효 기간]

처벌 주요내용	형량	공소시효기간
□ 제56조제3항: 아래 행위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① 승인·확인 없이 제조·수입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승인·확인을 받은 경우 -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받고 안생품 제조·수입 - 승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받고 안생품 제조·수입 - 물질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받고 살생물물질 제조·수입 - 제품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받고 살생물제품 제조·수입 ② 승인·확인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한 경우 -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생품 제조·수입 -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생품 제조·수입 - 물질승인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 제조·수입 - 제품승인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 제조·수입 ③ 행정처분 또는 금지·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10년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이 있는 경우 그에 부합하는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제조·수입하여야 하고,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유해성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경우 각각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을 받아야 함.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벌칙) ③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57조(벌칙) ③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6)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처벌 주요내용	형량	공소시효 기간
- 제조·수입 금지명령을 받은 안생품 제조·수입 - 물질승인 등이 취소되거나 제조·수입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 제조·수입 - 제품승인 등이 취소되거나 제조·수입 중지명령을 받은 살생물제품 제조·수입 - 회수·폐기 등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④ 시험·검사 또는 확인 절차를 부정하게 수행한 경우 - 거짓·부정하게 안생품을 확인한 자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받고 안생품 확인을 한 경우		
□ 제57조제3항: 아래 행위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① 변경승인 없이 제조·수입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받고 안생품 제조·수입 -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받고 살생물물질 제조·수입 -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받고 살생물제품 제조·수입 ② 변경승인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한 경우 - 변경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생품 제조·수입 - 변경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 제조·수입 - 변경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 제조·수입 ③ 행정처분 또는 금지·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제조·수입 금지명령을 받은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 업무정지 기간중에 시험·검사업무를 한 경우 -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 ④ 물질동등성·제품동등성인정을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하게 받은 경우 - 거짓·부정하게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거나 물질동등성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 제조·수입 - 물질동등성인정을 다시 인정받지 않고 살생물물질 제조·수입 - 거짓·부정하게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거나 제품유사성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 제조·수입 - 제품유사성을 다시 인정받지 않고 살생물제품 제조·수입 ⑤ 표시 사항 위반 - 표시기준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안생품 제조·수입 - 안생품 표시기준 위반 개선명령 미이행 - 살생물제품 관련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살생물제품 제조·수입 - 살생물처리제품 관련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7년

한편, 가슴기살균제 참사의 경우 판매유행시점(2000년)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기까지 약 17년(PHMG제품, 2016년 기소) ~ 20년(CMIT제품, 2019년 기소)이 소요되었으며, 환경피해의 경우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의 발현 및 입증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소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2022년 사회적참사위원회는 환경피해에 있어서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하는 것을 권고⁷⁾한 바 있음⁸⁾.

이에 개정안은 안생품 또는 살생물제의 사용과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사상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① 역학조사와 독성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방해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② 역학조사와 독성연구 모두에서 그 원인이 증명된 때에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안생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고 제조·수

7) 제3장 권고별 주요 내용

1. 가슴기살균제참사 분야(26건)

관리번호	권고	대상
3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은 상당수 환경피해의 경우 그것이 가시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환경피해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하기 바랍니다.	○ 국회의장 ○ 법무부 장관

8) 또한, 관련법에 따라 국가기관등은 해당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슴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관련 조치
2. 가슴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3. 기타 위원회가 진상규명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4. 재해·재난 관련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5.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치
6. 피해자 지원대책에 필요한 조치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입·판매·유통업자 등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짐.

참고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도 역학조사에 대해 규정하면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⁹⁾, 제재 수준은 2년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으로 다양함¹⁰⁾.

[역학조사 유사입법례]

법률	역학조사 규정	제재 수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역학조사) ①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疫學調査)를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⑥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⑦ ~ ⑨ 생략	300만원 이하 벌금
산업안전 보건법	제141조(역학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	(제23항 위반)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4항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9) 독성연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료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연구·분석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거부·방해·회피 등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10) 개정안의 제재수준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유사 입법례의 제재수준을 고려할 때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보여짐.

법률	역학조사 규정	제재 수준
	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역학조사 참석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 ⑥ 생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사상 또는 그에 준하는 건강피해의 원인이 현행법 제56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한 안생품 또는 살생물제로 인한 것임이 역학조사와 독성시험 모두에서 증명된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① 공소시효 규율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이 일반법적 성격을 갖고 개별법에서 특례를 둘 수 있는 점, ②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법원은 역학조사와 독성시험을 모두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한 점¹¹⁾, ③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경우 역학조사·독성시험 등을 통해

인과관계가 밝혀지기까지 17~20년 가량 소요되었으므로 현행 공소시효 기간(7년 또는 10년)에서 10년 정도의 공소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¹²⁾ 등을 고려할 때 개별법에서 공소시효의 특례를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공소시효 연장 특례 유사입법례]

법률	공소시효 특례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도 동일한 특례 규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2.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11) 서울고등법원 2024.1.11. 선고 2021노134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만성 흡입독성시험 결과와 역학 연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슴기살균제와 피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였음.

12) 독일의 경우 10년 이상 징역형은 20년, 5~10년 미만 징역형의 경우 10년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음.

덧붙여, 개정안 부칙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에서도 공소시효 규정 개정시 유사한 적용례¹³⁾를 두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판매 유행시점부터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기까지 약 17~20년이 소요된 점, 관련 판례에서 인과관계 확정 근거로서 역학조사와 독성연구 결과를 모두 요구한 바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 실정법상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은 내란·외환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그에 준하는 건강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피해 범죄의 경우에도 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둘 것 인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법적 안전성이라는 공소시효의 취지를 비교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둘째, 개정안은 공소시효 연장이 가능한 요건의 범위를 사상(死傷) 또는 “그에 준하는 건강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

13) 「형사소송법」 법률 제13454호 부칙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3조의2의 개정규정(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미적용)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현행법 제56조제3항 및 제57조제3항은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한하여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양 규정 간 적용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특히 “사상”에는 사망(死)뿐만 아니라 건강상태의 악화를 의미하는 상해(傷)가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별도로 규정한 “그에 준하는 건강피해”의 의미가 불분명하며, 만약 이를 상해에 이르지 않는 건강상 위험 또는 잠재적 피해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경우 본죄의 구성요건보다 공소시효 특례의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지는 체계적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정비가 필요해 보임.

법무부는 처벌의 대상보다 개정안에 따른 공소시효 연장의 대상이 더 넓어 체계상 부정합하는 측면이 있으며, 형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제268조)의 경우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상해’의 개념은 건강피해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현행법에서 ‘그에 준하는 건강피해’를 규정할 경우 기존 형법상 개념과의 관계가 불명확해 법 해석상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36

제3장 권고별 주요 내용

1. 가습기살균제참사 분야(26건)

관리 번호	권고	대상
3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은 상당수 환경피해의 경우 그것이 가시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u>환경피해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u> 하기 바랍니다.	○ 국회의원 ○ 법무부 장관

□ 필요성

- 대부분 환경피해가 드러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며 개인의 건강피해도 가습기 살균제를 이용한 바로 그 시점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발현되는 경우가 많음.
- * 미나마타병이 환경피해로 인정받게 되기까지는 치소사가 아세트알데히드를 생산하면서 수은을 촉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후로 36년, 첫 환자가 보고된 후로 12년이 지난 뒤였음.
- 가습기살균제의 건강피해 연관성 역시 가습기살균제가 처음 시판된 지 7년이 지나서야 밝혀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다양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의 흡입독성 시험이 진행 중임.
-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 기간 내에 형사책임을 묻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피해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필요함.

□ 관련 조사자료

- 「(직가-1)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및 제품 제조·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기업 조사」 결과보고서
- 「(직가-3) 최초 가습기살균제 개발경위 및 제품공급 과정 조사」 결과보고서